○○유치원 원아 방과후과정 체육활동 중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 원 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22가합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손해배상(국)
원 고	○○○ 외 2명	피 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[1심]2023. 6. 23. 원고일부승	비 고	
사건개요	❍ 원고는 사건 당시 ○○유치원 원아로, 2018. 6. 8. 15:45경 방과후과정 체육활동 중 다른 원아가 밀어주는 스쿠터보드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혀 좌안 공막열상 상해를 입음. ❍ ○○유치원 원장 및 교직원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좌안 공막열상 등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과실이 있으므로, 이에 피고 인천광역시는 교사들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함.		
주 문	1. 원고 ○○○에게 192,633,789원. 원고 ◇◇◇, □□□에게 각 1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. 6. 8.부터 2023. 6. 23.까지는 연 5%.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 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1/2는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		
판결이유	❍ 유치원 교사에게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찰과 철저한 지도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원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. 원고 ○○○은 5세 1개월에 불과하며, 발달이 다소 늦고,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점, 교사가 참여하여 그 지도아래 이루어진 체육활동 시간에 사건이 발생한 점, 스쿠터보드는 바퀴가 달려있어 유아가 넘어져 부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교사들은 원생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보호.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.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교사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. ❍ 원고 ○○○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세 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과실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,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원고 ○○○의 장애가 기여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도 없음.		